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67
----------	------

발의연월일 : 2016. 7. 25.

발의자 : 이원욱 · 신경민 · 제윤경

고용진 · 이동섭 · 윤관석

표창원 · 이재정 · 전혜숙

이학영 · 전현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 등에 대한 원칙으로 도로의 구조와 교통의 안전, 자연생태계 훼손 최소화의 내용은 포함하고 있으나, 주민이나 보행자의 주거권이나 안전 등의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현행 법령은 도로 건설 시 자동차 통행에 따른 인근 주민이나 통행자의 소음 피해 또는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문제를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하고 있음.

이에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 등에 대한 원칙으로 인근 주민이나 보행자가 소음,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받는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추가함으로써 도로 건설 시 주민이나 보행자의 주거권이나 안전 등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중 “도로공사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도로구조나 교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를 “도로공사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도로구조나 교통의 안전을 확보하며, 인근 주민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0조(도로의 구조·시설 기준 등) 도로의 구조 및 시설, 도로의 안전점검, 보수 및 유지·관리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u>도로공사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도로구조나 교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u>	제50조(도로의 구조·시설 기준 등) ----- ----- ----- ----- <u>도로공사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도로구조나 교통의 안전을 확보하며, 인근 주민 등의 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u>